

# 『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국가산업단지 확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등 날로 늘어나는 민원과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인근 부지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【 취득재산 】

#### 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

- 토 지 : 4,815m<sup>2</sup>
- 건 물 : 1,130m<sup>2</sup>
- 기준가격 : 8,200,000천원(가감평가 기준)

### 4. 참고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## 5. 검토의견

###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구미시 송정동 47번지의 대지 4,815㎡와 건물 1,130㎡ (가감정가 8,200,000천원)를 취득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
- 본 건은 만성적 주차난 해소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 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